

보도시점 2024. 6. 24.(월) 06:00 (월요일 석간) 배포 2024. 6. 21.(금)

녹색투자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투자 활성화 기대... 투자금융 안내서 발간

- 투자금융 관점에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역량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도구 및 사례 수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여부 및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 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를 6월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 ◆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 자본시장 형성(주식발행(ECM), 주식시장 상장(IPO) 등 관련 업무), △ 금융자문(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업무), △ 기업투자(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탈(VC) 등의 기업투자 관련 업무) 금융업무를 통칭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핵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기업별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됐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공시나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의 제도로 도입되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투자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정치적 논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 *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러한 가운데, 투자금융에 있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이 없어 무엇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환경부는 투자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법률실사 및 재무실사 등)를 바탕으로, ①이에스지(ESG) 법률실사, ②이에스지(ESG) 재무실사, ③이에스지(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실사 : 투자, 인수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제 활동을 진행하기 전 대상 기업 또는 자산의 실제 가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의미

‘이에스지(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하여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에스지(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에스지(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이번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안내서는 6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투자금융 이에스지(ESG) 안내서 표지 및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천지은 (044-201-6693)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투자금융 ESG 안내서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집필 배경

전세계적인 ESG 기조 강화로 인해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 ESG 관련 공급망 대응(원정업체의 하청업체 ESG 강화 요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등 경영상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ESG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ESG 이슈로 인한 기업가치 급락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가치 등락에 민감한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업계는 ESG를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각 투자기관들은 투자금융 업무 중의 하나인 실사(법률실사·재무실사 등)를 통해 피투자기업의 ESG 중 일부를 진단할 뿐, 체계적인 ESG 활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업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ESG 활용방안을 제공하고자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활용 대상

본서는 투자금융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피투자기업(IR 담당자 등 투자자 관리자), 투자금융 자문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및 기타 ESG 관련 유관 기관 등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활용 방식
투자자	사모펀드, VC, 연기금, 기업 내 투자담당자 등	피투자기업의 ESG 체크 및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피투자기업	IR 담당자, M&A 담당자 등	ESG를 활용한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금융 자문기관	법무법인(법률실사), 회계법인(재무실사, 컨설팅사(사업성 검토) 등	투자금융을 위한 ESG 실사 체크리스트 수립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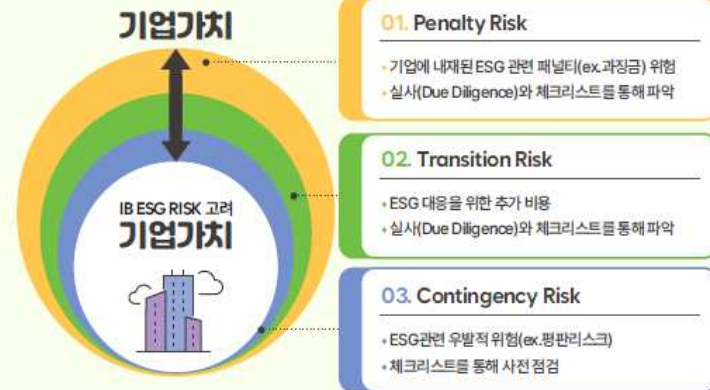
주요 내용

<제1장 ESG 실사 체크리스트>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외한 ESG 체크리스트만을 모아 제공함으로써 본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2장 ESG 개요>에서는, 최근 국내외 ESG 동향에 대한 소개를 통해 투자금융 실무자들의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본서의 집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 투자금융 ESG 실사(ESG Due Diligence) Framework>에서는, 투자금융의 통상적 업무인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재무실사(Financial Due Diligence)에 이은 ESG실사(ESG Due Diligence) 체계 및 이를 활용한 ESG 기업가치평가 방식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투자금융 ESG 실사 Framework



<제4장 ESG Legal Due Diligence (Penalty Risk)>에서는, 기업이 미준수 시 즉각적인 패널티(조업 정지·허가 취소·과징금 등)가 예상되는 ESG 관련 법률 선별 및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 ESG Financial Due Diligence (Transition Risk)>에서는, 날로 강화되는 ESG 규제에 대응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ESG 이행비용'의 점검 항목 및 이를 전통적인 기업가치평가(Valuation) 방식에 반영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제6장 ESG Contingency Due Diligence (Contingency Risk)>에서는, 기업 경영 중 우발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기후 리스크·평판 리스크)의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제7장 ESG 투자전략과 사례>에서는, ESG를 감안한 투자전략을 유형화하고 각 투자전략별 사례를 담았습니다